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일자 : 2010. 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 주요현안 및 요청과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입법담당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나. 교육입법담당 정원책정 계획(교육협력과-182(2010.9.7))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내 교육입법담당 지원인력 정원을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8명→9명, 1명 증원)으로 함 (안 제2조제1호)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5명에서 1명 감소한 3,064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문 : 붙임

다.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4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u>8명</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3,06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p> <p>1.----- ----- ----- : <u>9명</u></p> <p>2. ----- ----- ----- : <u>3,064명</u></p>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8. 11. 25.	공포	조례 제3280호
개정	2000. 5. 22.	공포	조례 제3437호
개정	2001. 2. 26.	공포	조례 제3513호
개정	2002. 4. 22.	공포	조례 제3602호
개정	2003. 3. 31.	공포	조례 제3658호
개정	2003. 12. 22.	공포	조례 제3707호
개정	2004. 3. 22.	공포	조례 제3727호
개정	2004. 11. 1.	공포	조례 제3781호
개정	2006. 3. 20.	공포	조례 제3887호
개정	2008. 3. 31.	공포	조례 제4159호
개정	2009. 4. 6.	공포	조례 제4278호
개정	2010. 4. 26.	공포	조례 제4411호
개정	2010. 6. 28.	공포	조례 제4429호
개정	2010. . .	공포	조례 제 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 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4명
3. 삭제 <2003. 3. 31>
4. 삭제 <2006. 3. 20>

5. 삭제 <2008. 3 .31>

제 3 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1. 25. 조례 제328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5. 22.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6. 조례 제3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2. 4. 22. 조례 제3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31. 조례 제3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 12. 22. 조례 제3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 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4. 3. 22. 조례 제3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 조례 제3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0. 조례 제3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 3. 31.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6. 조례 제4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4. 26. 조례 제4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28 조례 제4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